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8 김성인 의원외 3

나. 회 부 일 자 : 2000. 11. 16

다. 상 정 일 자 : 2000. 10. 16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사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남 은 기 의원

나. 개정이유

- 의회의원 상해 보상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의무직 공무원 1인”을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으로 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찬주)

-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의회의원 상해보상 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심의회의 위원중 의무직 공무원 1인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의무직 공무원 1인”을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상위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의무직 공무원 1인”을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심의회구성)①(생략) 1 ~ 2(생략)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생략)	제6조(심의회구성)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의직 공무원 1인 4. (현행과 같음)